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용산구 제2선거구, 노식래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

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

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

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·공급하도록 하되

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

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
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
○ 이는 2021년 4월 13일,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을 개정하여
공공재건축사업을 추가하면서
공공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을
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에서
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데 따른 것이고

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0%로 한 것은

시뮬레이션을 거쳐

기존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비율을
준용한 것입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